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간의 동질성에 관한 고찰

김 영 춘*

목	차
I. 서 론	IV. 3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 쿼타간의 가격에 의한 동질성
II. 2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 쿼타간의 동질성	V.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의 후생수준 비교
III. 3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 쿼타간의 수량에 의한 동질성	VI. 결 론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60년대까지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제국들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으로 세계무역의 규모는 괄목하게 확대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 자원파동과 세계경제의 경기침체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국제수지의 방어목적으로 수입규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무역불균형의 심화, 개도국의 외채문제, 선진국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로 국가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와중에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국제경제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GATT체제를 무력화시키게 되었고,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장벽의 성질과 강도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이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년대의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장벽은 고율의 관세로 보복적인 성격을 띠고 이용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의 무역장벽은 비관세장벽을 사용한 방어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무역정책의 도구가 쿼타제(Quota System)와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이다. 관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가 보통이며 수출자율규제와 같이 무역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관세는 또한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교수

것을 전제로하여 수입국에 의하여 관리되고 관세수입은 수입국 정부에 귀속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수출자율규제는 일시적인 수입급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이며 그 관리는 수출국 정부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관세부과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하여 수출자율규제는 특정 주요 수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관세도 물론 특혜관세와 같이 특정개도국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된다.

수량규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쿼타제나 수출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다. 광의의 쿼타를 협의의 쿼타와 자율규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쿼타는 관리주체에 따라 수출자쿼타와 수입자쿼타로 구분할 수 있고 수출자쿼타의 경우는 수출의 주도권을 수출자가 갖게 되므로 상대국과의 상대력이 제고되고 수출국의 수출패턴에 맞는 무역거래가 가능하나 수입자쿼타의 경우는 주도권을 수입자가 갖게 되므로 수출자의 지위가 수입자에 비해 불리해지고 수출자간 과다경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수출자쿼타이나 수입자쿼타이나에 따라서 쿼타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발생하게 되는 렌트소득(rent income)의 귀속이 달라진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측의 정부나 업계의 강한 요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순수한 의미의 자율적인 수출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출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수출금지, 수출카르텔, 수출쿼타 등으로 불리우고 수출자율규제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순수한 자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국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타율적 규제만이 역설적으로 수출자율규제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수출자율규제의 타율적 측면은 쿼타의 전형적인 구분인 수출쿼타와 수입쿼타 등 어느 것에 유사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초과이윤의 귀속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수입쿼타 성격이면서 형식적으로는 수출국에서 주도 운영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자율규제는 수출쿼타와 수입쿼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출국과 수입국의 영향력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Takacs는 시장경쟁정도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가정하에서 관세, 수입쿼타 그리고 수출자율규제간의 비동질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 관심은 수출이 쿼타와 수출자율규제에 의하여 규제 받지 않는 다른 공급업자가 존재할 경우에 지배적인 독점적 공급업자로부터 수출에 부과된 수출자율규제의 경우이다. 그 결과 수입가격이 수입쿼타보다 수출자율규제하에서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적인 장치로서 선별성의 수용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점이다.

본고는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에 관한 동질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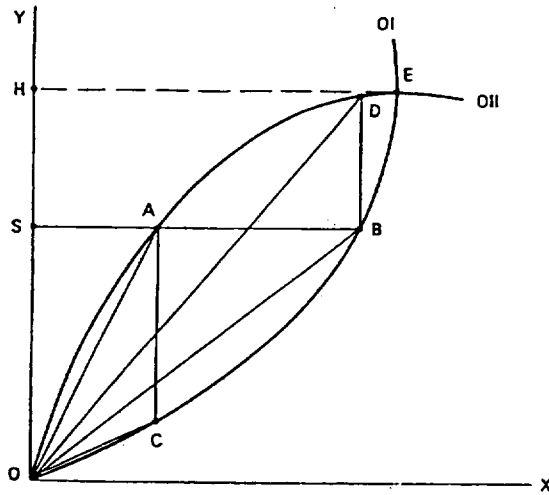
하에서 일반균형분석의 접근방법에 의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는 과거 쿼타에 관한 논의가 관세와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바와 같이 쿼타와의 동질성으로부터 수출입국간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II 장에서 2국모형하에서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에 관한 동질성을 분석함으로써 무역효과를 고찰하고, III 장에서는 3국모형하에서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와의 동질성 문제를 수입수량에 규정하여 분석하고, IV 장에서는 3국모형하에서 가격에 의하여 규정된 동질성을 분석하고, V 장에서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의 후생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가지의 무역정책도구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2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간의 동질성

무역규제의 경제적인 효과에서 관세와 쿼타는 동질적이라는 명제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토론되어져왔다. 최근에 무역제한의 서로 다른 형태들 간의 동질성의 분석은 수출자율규제의 경우를 포함한 Takacs에 의해서 확장되어져왔다. 특히 그는 부분균형분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장의 경쟁적인 구조하에 여러가지 경우를 분석하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출자율규제가 수입쿼타와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가 동일한 수량의 수입을 행할 때 국내가격, 생산, 소비, 수입가격 등이 동일할 것이냐는 문제를 각 시장의 경쟁조건을 달리하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수출자율규제에 의한 수입제한은 수입쿼타보다 교역조건 악화로 인하여 후생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¹⁾ 반면에 Murry, Schmidt 및 Walter는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의 동질성 문제를 지배적인 공급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규제된 공급업자의 초과함수와 지배적인 독점자의 시장점유율 탄력성에 달려있음을 주장하였다.²⁾

이 장에서는 모든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적인 조건하에서 수입쿼타와 수출자율규제간의 동질성을 분석한다. 이것은 Takacs에 의해서 분석되어진 경우 중의 한가지이다. 여기서 그는 동질성 명제가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관하여 고정되어 있고 부분균형분석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배정하는(수입쿼타의 경우에 수입허가권) 것과 수출규제(수출쿼타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허가권의 경매) 방법을 고려하여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는다. 재정수입의 배정은 최종적인 산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Takacs에 의해서 얻어진 동질성 결과는 단지 가능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s) 중의 한가지이다.

- 1) Takacs, W. C., "The Nonequivalence of Tariffs, Imports Quota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8, 1978, pp.565-573.
- 2) Murry, T., Schmidt, W. and Walter, I., "On the Equivalence of Import Quota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4, 1983, pp.191-194.



〈그림 1〉

본 논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2국(I 국과 II 국)과 2재(X재와 Y재)를 가정한다. 자유무역하에서 I 국은 상품 X재를 수출한다. 〈그림 1〉은 I 국의 오퍼곡선인 OI와 II 국의 오퍼곡선인 OII를 나타낸다. 자유무역균형은 E점에서 국제상대가격과 국내상대가격 $p = P_x/P_y$ 가 직선 OE의 기울기와 일치하도록 도출한다.

I 국이 수입쿼터를 사용하여 과거의 OH 수준으로부터 Y재의 수입수준을 OS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OS규모의 수입할당이 사용되어졌다면, 국제균형은 직선 OA와 일치하는 국제상대가격인 A점에서 얻게되고, 그것을 p^a 라고 표기한다.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또한 p^a 와 일치한다.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수입허가의 경매로부터 발생된 재정수입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즉 (1) 만약 정부가 X재에 관하여 재정수입 모두를 지출한다면, 국내상대가격은 직선 OB의 기울기와 일치할 것이다. 그것은 p^b 로 표기한다. (2) 만약 정부가 Y재에 대하여 재정수입 모두를 지출한다면, 국내상대가격은 직선 OC와 일치할 것이다. 그것은 p^c 로 표기한다. (3) 만약 정부가 일부를 X재에 나머지를 Y재에 재정수입에 지출한다면, 국내상대가격은 p^b 와 p^c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다. (4) 만약 정부가 사적인 분야에 재정수입을 재분배한다면, 국내상대가격은 A점을 지나는 I 국의 무역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일치할 것이다. 예를들어서 만약 두 재화 모두가 일반재라면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p^b 와 p^c 사이에 놓이게될 것이다. 따라서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단지 정부가 X재에 관하여 재정수입 모두를 지출하거나 또는 재분배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사적인 분야의 Y재 한계소비성향이 제로와 일치한다면 p^b 와 일치할 것이다.

그것은 수입쿼터로 인한 가능할 수 있는 각각의 결과중의 한가지는 I 국의 적절한 관세에 의하여 재생산되어질 수 있음이 확실하다. 그 관세는 국제가격 p^a 와 우리가 재생산을 원하는 국내가격과 일치하기 위하여 설정되어질 것이며, 그 재정수입은 쿼터하에서 지출되어지는 동일한

방법에서 지출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주어진 수입쿼타에 일치하는 관세가 재정수입이 지출되어지는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어진 쿼타에 대하여 재정수입의 부분이 Y재에 관하여 지출되는 것이 클수록 그 대응하는 관세가 더욱 더 높아진다.

수출자율규제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만약 I 국의 수입쿼타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림 1>에서 OS수준에 대하여 Y재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II 국에게 요구한다면, II 국은 수출쿼타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OS크기의 수출쿼타가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제균형은 국제상대가격과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이 p^b 와 일치하는 B점에서 달성된다.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두재화의 결합으로 정부가 X재에 관하여 재정수입 모두를 지출하던가 또는 단지 Y재에 관하여 지출되어지던가에 의존하는 p^a 와 p^b 간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정부가 사적분야에 대하여 재정수입을 재분배한다면, 상대가격은 사적분야에 의한 두 재화의 한계소비성향에 의존할 것이다.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만약 정부가 X재에 관하여 재정수입 모두를 지출하던가 또는 재분배의 경우에 있어서 사적인 분야의 Y재 한계소비성향이 제로와 일치한다면 단지 p^a 와 일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출쿼타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개개의 결과중의 한가지는 II 국의 적절한 수출쿼타에 의하여 재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주어진 수출쿼타에 의한 수출관세가 재정수입이 지출되어지는 방법에 의존한다. 주어진 수출쿼타에 의한 재정수입 중에서 Y재에 대한 지출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수출관세는 낮아진다.³⁾

국제상대가격과 국내상대가격에 대한 수입쿼타와 수출자율규제를 비교하기로 한다. 그것은 두가지의 정책 형태가 국제가격에 관하여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수입장벽은 p^a 에서 가격을 설정하고 수출자율규제는 p^b 에서 가격을 설정한다. 두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I 국이 Y재의 OS를 수입하는 것으로 주어진다면, 그 유일한 차이는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얼마를 지불하였는가이다. 수입쿼타하에 I 국은 X재의 SA를 지불하고 수출자율규제하에는 X재의 SB를 지불한다. 그 결과 차이 AB는 X재로 표시된 무역제한으로부터 재정수입이다. 수입쿼타의 경우에 있어서 I 국은 재정수입을 갖게되고, 수출자율규제의 경우에 있어서 II 국은 재정수입을 갖는다.

두가지의 선택적인 정책의 형태하에서 국내상대가격을 고려한다. 수입쿼타하에서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p^a 와 일치하고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재정수입이 지출되어지는 방법에 의존한다. 수출

3) Lizondo, J. S., "A Note on the Nonequivalence of Import Barrier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6, 1984, pp.182-185.
 Bhagwati, Jagdish, "More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8, 1968, pp.142-146.
 Falvey, Rodney E., "A Note on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Capital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6, 1976, pp.217-220.
 Rodriguez, Carlos A., "The Non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under Retali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 1974, pp.295-298.

자율규제하에서 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p^a 와 일치하고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은 재정수입이 지출되어지는 방법에 의존한다. I 국의 국내상대가격에 관한 동질성을 가지기 위하여 수입쿼타로부터 재정수입이 단지 X재에 관해서 정부에 의하던지 또는 I 국의 사적분야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국의 국내상대가격에 의한 동질성을 갖기 위하여 수출자율규제로부터 재정수입이 단지 X재에 관해서 정부에 의하던지 또는 II 국의 사적인 분야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정책 형태는 국내상대가격에 관하여 동질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부분 균형분석을 사용하여 밝혀진 그 반대의 결과는 재정수입의 배정이 Y재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역제한을 조건으로한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법이 무시되어졌기 때문에 발생된다. 이 효과는 재정수입이 X재의 경우에 있어서 항상 다른 재화에 관하여 지출되어진다는 가정에 대하여 동질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수입쿼타와 수출자율규제가 국내상대가격에 관하여 동질적이라할 수 있다.

Ⅲ. 3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간의 수량에 의한 동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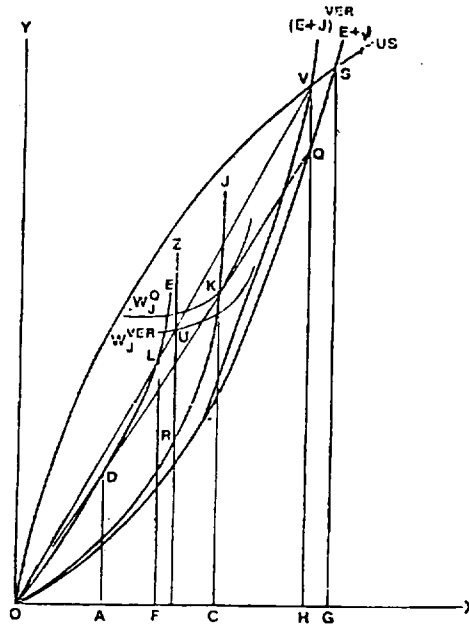
VER은 본래부터 차별적이기 때문에 쿼타와 비교하기 위한 전통적인 2국 분석은 부적절하다. 이 장에서는 쿼타와 VER을 비교하기 위하여 3국모형에 의한 일반균형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두가지의 무역정책 도구간에 근본적인 차이를 규명하는데 어렵다. 이는 수입쿼타가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가끔 수입에 부과되어지는 반면에 VER은 본래부터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공급자들의 제한을 배제한 동시에 한 공급국과의 협상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VER은 일본과 협상되어진 반면에 유럽의 공급자들은 어떤 양적인 규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Dinopoulos and Kreinin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후생손실이 일본에 대한 후생손실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실증적으로 3국 공급업자들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⁴⁾

이러한 두가지의 보호도구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 장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시장에서 우세한 완전경쟁하에서 2재 3국 모델의 일반균형을 사용한다. 여기서 미국을 US, 일본을 J, 그리고 유럽을 E라고 표기한다. VER이 2국가간에 협상되어지면, 수출국과 제 3국의 공급업자들은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는 쿼타와 VER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퍼곡선 - 무역무차별곡선의 분석도구를 사용한다. 그것은 유럽의 자유무역 오퍼곡선이 모든 제

4) Dinopoulos, Elias and Mordechai E. Kreinin, "Effect of the U.S. - Japan Auto VER on European Prices and on U.S. Welfa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88. pp. 484-491.

3국의 공급업자들의 총체적인 오퍼곡선으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음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다국 2재의 프레임워크와 동일하다.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대하여 X재(Y재에 대한 대가로)를 수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입쿼타와 VER간의 동질성은 수입수량에 관하여 규정되어진다. 수입국의 총수입량으로부터 제외된 VER은 동질적인 쿼타에 의하여 제외된 총계와 일치한다. 우리는 각국의 후생수준에 관하여 이러한 두가지의 도구의 효과를 조사하기로 한다.



<그림 2>

<그림 2>에서 OUS는 미국의 자유무역오퍼곡선을 나타낸다. 미국은 두 무역파트너로부터 두가지의 별도의 오퍼곡선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모든 제3국 공급업자들)으로부터 OE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OJ이다. O(E+J)를 발생하기 위하여 각각의 교역조건선에 따라 교역된 두개의 수량을 합한 것에 의한 총합산된 것이다. OUS와 O(E+J) 오퍼곡선의 교점 S는 미국의 자유무역균형점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 OS(나타나지 않는)은 자유무역 교역조건이다. OE, OJ 그리고 OS의 교점은 유럽과 일본에 대한 자유무역균형점이다.⁵⁾

미국의 자유무역에 의한 수입은 OG이고 수출은 GS이다. 미국 수입이 배제되어진 HG 하에서

5) Dinopoulos, Elias and Modechai E. Kreinin, "Import Quotas and VERs: A Comparative Analysis in a Three-Country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26, 1989. pp.169-171.
 Bhagwati, Jagdish, "VERs, Quid pro quo DFI, and VIEs: Political-Economy Theoretic Analysis" in Douglas A. Irwin eds.,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ics*(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1991), pp.169-183.

〈그림 2〉에서 OH에 대하여 글로벌 쿼타(global quota)에 제한되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미국의 쿼타에 의한 오퍼곡선은 V점에서 굴절된 OVH가 된다. 그것은 Q점에서 O(E+J)와 교차한다. 그러므로 점 Q는 쿼타에 의해 결정된 무역오퍼곡선이다. 두 국가간의 공급원간에 쿼타를 할당하는 방법이 다르다. 관세와 쿼타를 비교하는 문헌에 따라 관세와의 동질적인 쿼타로서 OH를 취급하는 것을 선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쿼타에 의해 결정된 교역조건선은 OQ이고 쿼타하의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그들의 오퍼곡선과의 교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각국의 수출은 OA와 OC이다. 그것은 그 구성에 의해 OH로 총 합계가 된다. 이것은 쿼타를 할당하는 임의적이지 않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욱 일반적인 VER과의 비교가 된다. 즉 VER과 쿼타의 비교는 또한 VER과 관세로 비교되게 한다.

글로벌 쿼타의 결과로서 미국의 무역균형은 Q이고 그 후생수준은 Q점을 통과하는 미국의 무역무차별곡선(보이지 않는)에 의해서 주어진다. 유럽의 쿼타에 의해 결정된 무역균형은 유럽의 자유무역 오퍼곡선 OE하에서 교역조건선 OQ의 교점인 D점에 의해서 주어진다. 후생수준은 D점을 통하는 무역무차별곡선(보이지 않는)에 의해서 나타내어진다. 끝으로 일본의 무역균형점은 K이고(선 OQ와 OJ의 교점) 그 후생수준은 무역무차별곡선 W'에 의해서 나타내어진다.

다음으로 일본에 관하여 부과된 VER에 대한 글로벌 쿼타로 나타낸다. 쿼타와 달라서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지대소득을 획득한다. 동질성의 규정과 일치한 VER은 쿼타에 의해서 제외된 것과 일치하는 합계에서 미국의 총수입으로부터 제외한 그 수준에서 설정되어진다. 즉, VER은 HG량에서 미국 총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배제된 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허용된 일본의 수입협정된 수량은 OC보다 더 낮다. 그 이유는 VER이 유럽의(그리고 일본의)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추가적인 수출을 자극한다. 단지 미국에 대한 유럽의 수출업자들의 상채를 증가시킨 후에 제외된 일본의 수출수량을 HG와 일치할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이것은 V점에서 미국의 자유무역오퍼곡선 OUS를 교차하는 방법에서 결합된 일본과 유럽의 VER에 의해 결정된 오퍼곡선을 재도출함으로써 추론되어진다. 그 VER에 의해 결정된 일본의 오퍼곡선은 R점에서 굴절된 ORZ이다.

일본의 수출업자들이 임대소득의 부분을 받기 때문에 VER에 의해 결정된 교역조건선은 OV이다. VER과 관련한 미국의 후생수준은 V점을 통과하는 무역무차별곡선(나타나지 않는)에 의해서 나타내어진다. 그것은 동질적인 수입쿼타제도하에서의 후생수준 보다 더 낮다. 미국의 수입수량은 쿼타하에서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은 임대소득을 획득한다. 그래서 미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유럽의 VER에 의해 결정된 무역균형점은 OE와 OV간의 교차점인 V이다. 그 후생수준은 L점을 통과하는 무역무차별곡선(나타나지 않는)에 의해서 나타내게 된다. 그것은 미국의 수입쿼타제

도로부터 나온 결과보다 더 높다. 유럽의 수출량은 미국쿼타하에서 그것에 관련하여 상승한다(X재에 관련하여 측정된 AF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역조건은 OQ으로부터 OV로 개선된다. 달리말하면, 유럽의 수출은 배제된 일본의 수출부분으로 대체된다.

일본의 후생수준은 두가지의 양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교역조건은 미국의 쿼타제도에 관련하여 개선된다. 그러나 그 수출량은 글로벌 쿼타의 일본의 몫은 차지하고 미국쿼타에 의해 배제된 총량인 HG보다 더 많은 량에 의해 감소한다. 그 감소에 대한 이유는 제 3국 공급업자들(유럽)으로부터 대체된다.

〈그림 2〉에서 일본의 새로운 후생수준은 U점을 통과하는 무역무차별곡선 W_j^{VER} 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일본의 오퍼곡선 ORZ와 OV의 교차점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것은 일본이 미국의 글로벌 쿼타하에서 보다 개선되던지 또는 동질적인 VER하에서 보다 개선되던간에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하게 무역무차별곡선과 오퍼곡선의 형태에 의존한다. 그것은 W_j^{VER} 의 형태가 W_j^Q 의 위쪽에 놓이는 경우 또는 아래쪽에 놓이는 경우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모호한 후생범위는 2국 프레임웍에서 발전된 이론으로부터 이탈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일본수출을 대체하는 다른 공급원(유럽)의 존재이고, 그리고 VER하에서 제외된 수량을 글로벌 쿼타보다 더 크게하도록 강요하는 이유이다. 2국분석에 있어서 일본에 의해 배제된 수량은 수입쿼타와 VER의 무역정책 도구하에서 동일하다.

대칭적인 산출결과는 VER을 일본 대신에 유럽과의 타결되어져왔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일본은 U.S. 쿼타제도하에서 보다 VER하에서가 더 유리하다. 반면에 유럽에 대한 후생범위는 모호하다.⁶⁾

IV. 3국모형하의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간의 가격에 의한 동질성

이 장에서는 수량 동질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격에 의한 동질성을 재규정하고자 한다. VER은 주어진 쿼타에서와 같이 수입국의 동일한 국내상대가격만큼 발생게 될 것이다. 가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내가격선(나타나지 않는)이 Q점을 통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것은 VER이 유지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은 〈그림 2〉에서 국제상대가격선 OV에 평행한다. 이러한 가정은 미국의 X재

6) Dinopoulos, Elias and Mordechai E. Kreinin, op. cit., p.174.

Melo, J. De, "Price, Quality and Welfare Effects of European VERs on Japanes Auto", *European Economic Review*, Vol.32, No.7, 1988, pp.1527-1546.

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값이 제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과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만약 두 재화가 미국에서 일반재이라면 적용된다. 그 경우에 가격이 동질적인 VER하에서 국제상대가격선은 선 OV보다 더 가파르고, 미국 무역균형점은 오퍼곡선 OUS에 따라 V의 왼쪽에 놓일 것이다.

가격 동질성 분석은 수량 동질성의 경우와 일치한다. 미국의 수입제도가 쿼타로부터 동질적인 VER로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후생수준은 감소하고, 유럽의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VER하에서 일본의 후생수준은 W^{VER} 와 같이 점 U을 지나는 무역무차별곡선에 의해서 나타난다. 두가지의 무역정책도구간 후생수준의 비교는 일본에 대하여 모호하다. 즉 그것은 무역무차별곡선의 형태에 의존한다. 일본이 글로벌 쿼타하에서 보다 VER하에서 더 악화되는 경우를 <그림 2>에서 보여준다.

수량의 동질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두가지의 대립하는 영향을 조건으로한다. 그 교역조건은 VER하에서는 개선한다. 반면에 무역량은 유럽의 공급원으로부터 대체하기 때문에 미국의 쿼타제도에 관련하여 감소한다. 그 순수한 결과는 두가지의 영향중에서 더 강한 것에 의존한다. 쿼타와 가격 동질성의 VER간의 후생비교의 기하학적인 분석은 수량 동질성 비교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다.

Brecher and Bhagwati는 2국의 모형에서 수입관세와 가격 동질성의 수출관세간의 후생범위가 수출국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⁷⁾ 이 결과는 재화중의 한가지가 소비에 있어서 열등재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3국의 프레임웍에 있어서 일본의 후생 범위는 열등재에 관계없이 애매 모호하다. 요컨대, 동질성의 규정에 관계 없이 직접적인 비생산적 이익추구(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 DUP)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제 3국의 개입은 VER과 쿼타 또는 VER과 관세의 동질성 결과를 변화시킨다. 2국모형하의 분석 결과는 제 3국 공급업자로부터 대체가 가능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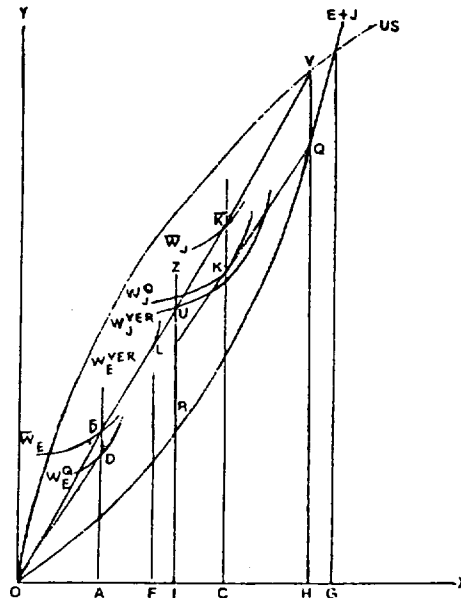
V.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의 후생수준 비교

이 장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쿼타의 수량적 동질성에 관한 후생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은 <그림 2>의 부분을 재도출 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목적은 수입수량 GH을 배제하기로 한다. 이것은 쿼타에 의해서 달성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유럽으로부터 수입OA 그리고

7) Richard A. Brecher and Bhagwati, J.,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sus Import Restrictions: A Welfare - Theoretic Comparison", in Douglas A. Irwin eds.,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1), pp.184-198.

일본으로부터 수입 OC의 결과이다. 또는 일본과의 협정된 VER의 결과이다. 그리고 V를 통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유럽 플러스 일본의 총오퍼곡선을 이동한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OI까지 감소한다.

두가지의 정책도구간의 후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당분간 미국은 각각의 두 수출국과의 쿼타와 동질적인 VER을 협정하는 것을 가정한다. 달리표현하면 유럽은(VER하에서) OA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반면에 일본(VER하에서)은 OC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각국은 VER과 관련된 관세와 동질적인 재정수입을 받는다. 유럽과 일본과의 결합된 VER에 의해 결정된 오퍼곡선은 Q점에서 굴절된 OQV가 된다. 유럽의 무역량은 \bar{D} 점에서 이고, 그리고 \bar{W}_E 후생수준을 얻게된다. 반면에 일본의 무역량은 \bar{K} 점에서 이고, \bar{W}_J 후생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3>

이제 미국의 쿼타로부터 이동시키면, 일본의 VER에 상응하는 수량에 대한 교역조건 OQ와 OV를 발생시켜 두가지 부분으로 분해되어질 수 있다. 첫번째의 구성요소 재정수입- 이전효과라 불리워질 수 있고, 그것은 항상 두 수출국가에 대하여 정(正)이다. <그림 3>에서 일본은 점 K로부터 \bar{K} 로 이동하고 그 후생수준은 W_E^Q 로부터 \bar{W}_E 로 증가한다. 반면에 유럽은 점 D로부터 \bar{D} 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후생수준은 W_E^Q 로부터 \bar{W}_E 로 증가한다. 이것은 2국의 프레임웍에 의해서 획득된 유일한 효과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VER은 항상 일본의 견해로부터 쿼타에 대하여 도리어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되어져 왔다.⁸⁾

8) Dinopoulos, Elias and Mordechai E. Kreinin, op. cit., pp.174-177.

그런데 두 번째의 구성요소는 무역대체효과이다. <그림 3>에서 유럽은 교역조건선 OV을 따라 점 \bar{D} 로부터 L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후생수준은 \bar{W}_E 로부터 W_E^{VER} 로 더욱 개선된다. 각국과의 협정된 VER로부터 일본에 관하여 부과된 VER로 전환할때 유럽의 무역량은 증가한다. W_E^{VER} 이 점 L에서 선 OV에 접하기 때문에 무역대체효과는 유럽에 유리한다. 유럽의 자유무역오퍼곡선이 무역량을 각각으로 축소시키거나 또는 불변을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직적(단위 탄력성)이거나 후방굴절할 때 유일한 예외가 발생한다.

유럽의 무역확대에 상응하는 동일한 양으로 일본의 무역량을 위축시킨다. <그림 3>에서 일본은 점 \bar{K} 으로부터 U(최종적인 균형점)로 이동하고, 그것은 $\bar{K}_U = \bar{D}_L$ 이다. 일본의 무역량은 \bar{K}_U 로 감소하고 그 후생수준은 $\bar{W}_J - W_J^{VER}$ 로 감소한다. 무역대체효과는 2국 프레임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작용은 유럽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관세와 동질적인 쿼타와 차별적인 VER간의 후생범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특히, 만약 무역대체효과가 재정수입전환효과를 지배한다면, $W_J^Q > W_J^{VER}$ 이다. 역으로 재정수입전환효과가 무역대체효과 보다 더 크게 될 때에 일본은 VER하에서 더 유리하다.

VI. 결 론

수출자유규제와 수입쿼타간의 2국모형하에 동질성 문제는 국내상대가격에 의한 최종적인 산출이 정부 제한으로부터 발생한 재정수입을 배정한 방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모든 시장에서 완전 경쟁조건하에 있을지라도 수입쿼타와 수출자유규제하에 국내상대가격의 동질성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무역제한으로부터 발생된 재정수입의 지출은 최종적인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쿼타와 수출자유규제정책간의 동질성은 단지 가능할 수 있는 결과 중의 한가지이다.

2국모형하에서 수입쿼타와 수출자유규제간의 선정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로, I국에서 Y재의 생산자의 관점으로부터 두가지의 정책도구 선택에 의해서 암시된 보호수준은 서로 다르다. 특히, 만약 정부가 두 재화에 관하여 지출된 재정수입을 처분하거나 또는 사적인 분야에 대한 재분배의 경우에 있어서 두 재화가 I국에서 일반재라면, I국에 의한 수입쿼타는 II국에 의한 수출자유규제 보다 Y재의 더 높은 수준의 국내생산을 보호한다. 둘째로, 만약 두 정부가 두 재화에 관하여 재정수입을 지출할 것이라면 또는 사적인 분야에 대한 재분배의 경우에 있어서 두 재화가 두 국가에 있어서 일반재라면 I국에 의한 수입장벽은 II국에 의한 자율적 규제보다 두 국가간의 국내상대가격에 있어서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VER이 본래부터 차별적이기 때문에 쿼타와 VER간의 비교는 다수국 프레임웍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러한 프레임웍은 일반균형분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그 결과는 부분균형에서 또는 2국 프레임웍에서 도출된 내용과 다르다. 본 논문에서 단지 일본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VER하에서 미국의 수입쿼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어떤 규제로부터 유럽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미국의 후생수준은 2국 프레임웍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동질적인 VER하에서 보다 쿼타하에서 더 높다. 그런데 2국 프레임웍의 경우에 반하여, 일본의 후생에 관한 두가지 도구의 상대적인 효과는 제 3국의 공급원으로부터 대체하기 때문에 후생수준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범위는 유럽(제 3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유럽(제 3국)에 대하여 미국의 VER은 쿼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질성의 수량에 의한 규명과 가격에 의한 규명에 대하여 적용된다.

수출공급업자들이 수입국의 쿼타보다 수출자유규제를 더 선호하는 확실한 이유중의 한가지가 국내가격과 외국가격간의 차이에서 발생된 재정수입의 일부분이 수출공급업자에 이전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수출자유규제로 인하여 수출공급업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독점적인 행위로 수출공급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자유규제로 수입국의 국내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증가시키고 또한 국내생산자들이 경쟁적인 행위를 유지한다면 외국생산자들의 반작용에 관계 없이 과점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생산자들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많은 이익을 득할 확율이 높아진다. 수출이 과도하게 제한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가격상승은 외국공급업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수출자유규제의 부과에 따른 수출국측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과 재화에 대한 한계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출규제국에 의한 영향으로 비규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용증가와 생산요소의 지대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게 되고 수출국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